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처리요령

교통사고란 사고 장소와 사고의 형태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접촉, 충돌사고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호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 요령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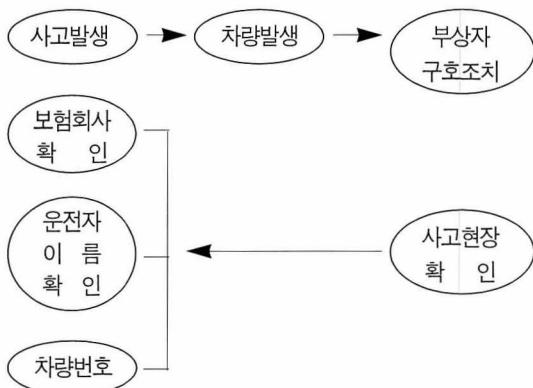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항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다닌다고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보험증권을 동시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하여 한번쯤은 사고에 대한 생각을 머리 속에서 그려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순서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 책을 한번쯤은 읽어봄으로써 매월 15일에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생각 속에서나마 사고에 대한 도상훈련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봄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므로써 더 커다란 2차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 시킨 후 제일 먼저 부상자를 구호조치하고 차량 파손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등 사고 현장의 보존 조치를 하고 가·피해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사고 발생

교차로 또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에게 접촉,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던지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하였든지 또는 주택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과 접촉하였든지 간에 일단 자동차가 운행중에 다른 물체와 접촉, 충돌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가 아무리 작아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주변공간을 폭넓게 활용하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쉽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 위험성만큼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 도로에 있었다면 외부와의 모든 접촉 충돌은 사고의 발생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 길을 가다가 뛰어오는 어린이를 보고 위험을 예견하여 자동차를 세웠는데 어린이가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해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달려오는 어린이를 보았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하여 피해자 스스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무조건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물론 피해자의 과실은 별개로 한다.)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나와보니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차에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

게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지점이 대로변 등으로 불법주차 장소라든지 또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라면 주차 차량을 식별하기 쉽게 차량표지판을 설치해 놓든지 하는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자동차의 소유주는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일반인들의 평범한 생각과는 달리 조금은 주의하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동차는 생활에 상당한 편리를 주는 문명이기도 하지만, 달리는 살인무기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와 사람의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가 지게 되는 것이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하여 신호위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녹색 진행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행신호를 보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진행방향 전방 좌·우의 안전유무를 확인해야 할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과실비율(현행 손해배상에서 20~40% 정도의 비율정도)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